첨부.

동대구 비스타동원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78번지 외 136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민영주택 총 524세대 중 일반분양 368세대[지하2층~23층, 5개동]

■ **공급대상**

구분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59	59.9782	19.1079	79.0861	38.2690	117.3551	51
	74	74.9796	24.5818	99.5614	47.8407	147.4021	37
	84A	84.9864	25.4134	110.3998	54.2255	164.6253	176
	84B	84.8328	25.8846	110.7174	54.1275	164.8449	104
합 계							368

■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구분	59	74	84A	84B	계
장애인	확정	2	1	6	3	12
	예비	1	0	2	1	4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확정	1	1	6	2	10
	예비	0	0	2	1	3
장기복무군인	확정	1	1	2	2	6
	예비	0	0	1	1	2
중소기업근로자	확정	1	0	2	2	5
	예비	0	0	1	1	2
북한이탈주민	확정	0	0	1	1	2
	예비	0	0	0	0	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일정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 01. 25(금)		견본 주택
견본주택 개관	2019. 01. 25(금)		대구 수성구 청수로 86(동대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19년 01월 30일(수) 08시~17시30분	아파트투유 인터넷청약(https://www.apt2you.com) 및 동대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방문청약	2019년 01월 30일(수) 10시~14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9. 02. 12(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s://www.apt2you.com)
계약 기간	2019. 02. 25(월) ~ 02. 27.(수)		당사 견본주택

※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바랍니다.**(국민은행 접수불가)**
- 특별공급 중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나 인터넷 청약신청 이전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은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정보)취약 자에 한하여 가능

2.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예치 기준금액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또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
  ※ 해당 기관 추천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바람.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당첨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4항, 제5항,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우선 공급(순번 및 선정 추첨 방식)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3. 신청시 구비서류

■ 특별공급 구비서류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O		본인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O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감증명서	O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O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주민등록증	O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O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O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주민등록표등본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O	본인	단독세대 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O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인장	또는 서명으로 대체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사업주체는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구비서류의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에 한해 신청접수 시 제출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확인(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 .01. 25(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동대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및 팜플렛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1.2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 문의



분양문의 : 1899-1139